

의안번호	제 33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김영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1월 15일

#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3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월 15일

발 의 자 : 김영주, 임희무, 엄재창  
연철흙, 윤은희, 최광옥  
이광진

## 1. 제정이유

-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공무원, 중증장애인공무원, 근로지원인, 보조공학기기의 정의 등 (안 제2조)
- 나.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범위 등(안 제5조)
- 다.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(안 제9조)
- 라.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라. 기 타
  - (1) 입법예고 :
  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##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공무원”이란 충청북도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중증장애인공무원”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근로지원인”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,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.
5. “전문기관”이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

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도지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, 보조공학기기·장비(이하 “보조공학기기 등”이라 한다)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신청)**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범위)**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
2.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
3.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
4.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
2.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

**제7조(지원 기준 및 절차)**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,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8조(지원방법)** ① 도지사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·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** 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
2.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
3.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

#### 4.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

-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0조(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)**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운영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5.5.18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(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)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5.1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5.18.>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근로지원인 배정시 인건비 및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구입비용 발생

## 3. 관련조문: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(안 제5조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안 제5조 1항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

나. 추계 결과 : ' 16년부터 향후 5년간 총 60백만원 정도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
세 출	60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
출연금 지급	60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

※ 장애인 1백만원, 중증장애인 2백만원 기준으로 5년간 현재 도청 내 장애인 공무원에게 지원기준으로 추계되었으며, 근로지원인에 대한 예산편성은 향후 수요발생시 편성

## 6. 작성자 :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